

# 汎用프로그램 開發準備金制度 導入의 切實性

## 1. 2000年代 韓國 經濟·社會 先進化 要件

2000年代 韓國經濟·社會 先進化를 前提要件으로서 情報産業의 체계적 육성에 의한 高度 情報化社會 실현, 世界貿易思想 및 構造變化에의 능동적 대처, 雇傭構造 변화에의 사전대처 등이 지적되고 있다.

즉 産業의 情報化로 産業競爭力 강화, 經營 및 管理能率의 극대화가 추구되어야 하고 産業社會에서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國民 欲求增大와 質的 高度化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高度 情報化 社會의 실현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情報處理産業을 중심으로 한 情報産業의 체계적 육성과 이용자 지향적인 政策開發이 절실하다.

世界貿易環境 역사 知的所有權에 대한 가치유지 관심고조와 보호의식이 강화되는 가운데 先進 各國의 尖端情報産業 分野에 대한 集中 投資와 資源의 總動員 투입이 중시됨에 따라 開途國에서의 勞動集約的 産業의 比較 優位性은 점차 상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情報의 武器化·技術革新 등으로 서비스 貿易의 自由化 비중이 급증함과 동시에 情報의 효율적 管理能力이 商品·서비스 生産成果의 要諦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전략이 艱요한 것이다.

동시에 科學技術의 産業化와 尖端技術 발전에

따른 雇傭量 감소, 勞動力의 질적 변화 등 雇傭構造變化에 대하여도 事前對應策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情報化社會 실현을 위해 그 主役産業으로서 S/W産業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S/W技術은 情報化의 진전을 좌우하는 核心基盤技術로서 우리나라가 2000年代 高度 情報化社會 실현, 先進經濟·技術國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S/W 技術力 振興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現 經濟·社會와 件에 비추어볼 때 S/W 産業育成의 絶실성은 명확히 부상되고 있다. 즉 S/W力低劣이 國內 情報産業의 원활한 成長을 阻害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어 情報産業 分野別 불균형 심화에 따른 불이익이 加重되고 있다.

또한 우수두뇌·高學力 人力 등 國家資源의 最適活用와 件을 갖추어 4~5년 후의 高等 失業群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도 S/W 産業 育成이 絶실하다. 전국 247개 대학중 147개 대학, 337개 학과의 1987학년도 情報産業 관련 신입생은 전체 총 신입생의 13.1%인 3만 6,142명으로 집계되었는데 86年度 졸업생 취업률은 48.3%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은 艱요한 실정인 것이다.

더욱 주목하여야 할 점은 各 分野의 情報化 진전으로 H/W 비중이 1955年 18%, 1980年 70%에서 1990년에는 9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이에 따라 S/W産業은 세계적으로 高附加 價值·高成長이 예측되는 輸出 有望産業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이다. 美國 情報處理産業協會

(ADAPSO) 推計에 따르면 美国 情報處理市場 규모가 1975年 50억달러, 1985年 500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2,000억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日本에서도 역시 1980年 6,699억엔에서 2000년에는 34조 3천억엔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

## 2. 韓國 情報處理産業 実相

그러나 韓國 情報處理産業의 실정을 보면 규모면에서 美国과 日本에 비해 106배와 22.7배의 격차로 저위에 있음이 本會 구조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同産業의 공급측면에서는 輸入依存도가 44.8% 수준으로 높은 반면, 輸出比重은 4.2%로 극히 낮아 對外 競爭力은 허약한 실정이다.

産業歴史를 볼 때 同業種內 77.6%의 企業이 1980年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밝혀져 이미 1975年 이전에 62.7%의 企業체가 설립·운영되어 오고 있는 日本에 비해 技術·마케팅력 등 경영능력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勞働環境側面에서도 1987年中 종업원 이직률이 8.1%로 全体産業 平均 3.5%나 製造業 平均 4.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어 産業基盤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곧 勤務環境의 안정성 부족으로 생산성 향상에 阻害要因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한다.

S/W技術開發力 部門에서도 1986年中 S/W技術人力이 9,775名으로 推計되었는데 이는 1985年 日本 同部門 人力 14만 5,007名의 6.7% 수준에 불과하여 技術開發基盤이 크게 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S/W人力 구성에서 高級技術者 비중이 5.8%에 머물러 技術人力의 질적 향상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S/W開發実績에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高級技

術이 요구되는 시스템S/W의 開發比重은 7.5%에 그쳤고 公營S/W開發에 대부분의 企業들이 비중을 두고 있어 우리의 S/W技術水準이 劣位에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企業體質面에서는 企業資産 중 有型固定資産의 비중이 13.6%로 낮아 현재의 担保金融制度下에서 外部 金融調達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담보력이 미약하여 資金動員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資本剩餘金, 利益剩餘金 등 企業內 留保資金 역시 빈약하여 内部資金動員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企業損益面에서도 売出規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売出原価, 營業外 費用, 特別損失 등 諸 經營關聯費用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当期 純利益을 실현하지 못한 부실한 영업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 3. 汎用프로그램 開發準備金制度 導入 方案

韓國 情報處理産業은 그 성장·육성의 절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안고있다. 그러나 보다 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시장 유통측면에서 S/W에 대한 商品性 認識이 크게 결여되고 있는 점이다.

즉 汎用性 있는 S/W에 대한 商品으로서의 인식부족은 民間業界의 S/W開發意慾을 저하시켜 産業成長基盤 구축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 S/W需給方式을 注文生産体制에서 商品生産体制로의 轉換을 유도하여 汎用性 있는 프로그램의 開發·普及 촉진에 의한 S/W 産業 跳躍基盤을 다져 나갈과 동시에 이용자의 S/W 開發·購入費用 부담을 절감시키는 대응책이 우선적으로 緊要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対応策의 일환으로 業界는 汎用프로그램 開發準備金制度의 導入을 간절히 요망하여 왔다.

현행 우리나라 租稅法에서 인정하고 있는 準備金制度는 証券去來準備金, 投資準備金, 鉦業投資準備金, 技術開發準備金, 海外事業損失準備金, 輸出損失準備金, 價格變動準備金 등 13개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準備金制度들은 一般 鉦業, 製造業 및 他 技術用役業 등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制度의 내용 즉 積立主體, 積立對象, 積立方法 등에서 볼 때 S/W產業과는 무관한 것들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情報文化 暢達을 위해 健全한 情報處理産業의 振興政策的 必要성을 一應 강조하면서 汎用프로그램 開發을 촉진할 수 있는 별도의 準備金制度 도입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특히 이와 같은 準備金制度는 그 특성상 정부 입장에서 볼 때 租稅의 전면 면제가 아닌, 一定期間 이후로의 納稅유예에 그칠뿐 아니라 지원 장치 마련정도로서 政策效果가 크다 할 것임으로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總理令 등을 통하여 汎用프로그램 登錄制度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의 主內容으로는 同制度에서의 登錄對象 프로그램을 汎用성과 商品성이 있는 국내에서 開發된 S/W로 하되, 게임·오락 등비업무용 S/W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S/W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S/W業을 영위하는 法人 또는 個人이 個別프로그램 또는 판매가능한 서브 프로그램도 등록대상으로 할 것이 요청된다.

나아가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上 프로그램 登錄과 連繫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해 同 保護法上 登錄實務業務를 同一 民間協會 機關이 수행할 수 있게 한다면 2重登錄의 번거로움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本 登錄制度에 의해 등록된 S/W가 保護法상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保護法의 등록에 따른 권리가 발생되도록 운용의 신축성을 보완하면 실효

성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汎用프로그램 登錄制度는 汎用性 있는 S/W를 상품으로서 개발·유통되게 하자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汎用프로그램 便覽」을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토록 하고 業界·學界 등 民間人士들을 중심으로 「汎用프로그램 民間審議委員會」를 구성하여 登錄對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審議토록 하는 한편, 政策當局에도 프로그램 流通·促進에 관한 業界意見을 건의토록 하는 기능을 부여하면 합리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汎用프로그램 登錄制度 시행과 함께 汎用프로그램 準備金制度를 도입·실시가 健全한 것이다.

즉 租稅減免規制法에 「프로그램 準備金」制度를 제정, 上記 登錄制度에 의거 프로그램을 登錄한 者에게대하여 租稅支援(納稅 猶予)을 함으로써 S/W產業 體質強化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準備金 積立對象은 등록된 프로그램의 판매 수입금액이나 당해 프로그램 판매에 수반하여 정보처리에 관한 專門인 지식·기술 등 役務提供에 따른 收入金額으로 하고, 積立限度는 積立對象 金額의 50%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同 準備金 處理방법은 4年 據置後 4年間 均 등 분할상각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이다.

日本의 경우도 同制度가 1979년부터 租稅特別措置法에 의거 시행되어 옴으로써 日本 S/W產業의 성장 기틀이 다져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日本에서의 汎用프로그램 開發 準備金은 S/W業을 영위하는 法人이 日本 国内에서 개발하여 普及促進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情報處理振興協會(IPA)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準備金 積立金額은 汎用프로그램의 양도 또는 이와 관련된 役務提供에 의한 收入金額으로 하

---

되 積立率을 1983년까지는 同收入金額의 50%까지 하였으나 현재는 30%로 조정·시행되고 있다.

準備金으로서 換金算入한 積立金의 還入方法은 4年の 据置期間을 거친후 4年間 均등 분할 益金還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法人稅 確定申告時 IPA(日本情報處理振興事業協會)가 발행하는 汎用프로그램 등록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여 이를 확인토록 하고 있는 점이다.

日本에서의 汎用프로그램登録制度는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制度和 관련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 등록제도와는 구별된다.

後者の 등록은 당해 S/W에 대한 著作權 내지는 法律的 권리를 명백히 하기 위함인데 반해 前者의 汎用프로그램 登録은 프로그램의 商品性 提高와 汎用프로그램開發 및 流通促進에 의한 情報化促進 기반조성을 위해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日本 汎用프로그램登録制度에서 등록허가한 프로그램은 電子計算機 利用 또는 利用技術을 高級化 할 수 있는 高級S/W의 기본적인 改變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가능한 S/W로서 自国内에서 개발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들 S/W를 바로 準備金 積立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登録者 資格은 S/W業을 영위하는 法人 또는 個人으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발하고 당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者, 또는 IPA의 위임을 받아 개발하고 그 普及義務가 있는 者로

하고 있다.

登録의 單位는 당해 프로그램에 몇개인가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서브 프로그램 단위 등도 購買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들 서브 프로그램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신청은 S/W情報센터(SOFTIC)에 分期 單位로 年 4회하되, 유효기간은 2年이며 신청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登録 關係書類는 汎用프로그램登録 및 登録證明書 交付 申請書, 著作者의 概要 說明書, 시스템 說明書, 導入 解説書, 이용자 메뉴얼 등이다.

1979年 이후 1985년까지 日本에서의 汎用프로그램 등록실적은 약 5,100件으로 年間 850件씩 등록된 것으로 보아 同制度가 매우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같은 日本에서의 例와 우리나라의 S/W 産業實相을 함께 고려할 때 우리도 汎用S/W 登録制度和 함께 準備金 制度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데는 再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情報處理産業은 1980年代 이후 生成되기 시작한 幼維産業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租稅, 金融政策의 側面에서 유효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汎用프로그램에 대한 등록제도와 準備金制度는 S/W産業 도약의 획기적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음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